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8. 19 선고 2020가단640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

담당변호사 김다연

피고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

담당변호사 임종석

변론 종결2021. 7. 22.

판결 선고2021. 8. 19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5. 11. 체결한 증여계약을
152,163,4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과 E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4. 18.

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4,318,1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D과 E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5. 2.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,738,5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 등과 E의 거래관계

(1) E는 아산시 F 소재 G역 2층에서 'H' 및 'T' 사업장(위 두 사업장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장)을 운영하던 자이다.

(2)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원고) A는 2015년 5월 경부터 냉동수산물류를, 선정자 J는 2015년 5월경부터 육류를 E에게 공급하였다(각 구체적 거래내역은 별지 A 거래목록, J 거래목록 기재와 같다).

나. 채무자 E의 각 처분행위

(1) E는 2017. 4. 17. 처제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(이하 이 사건 부동산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,000,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계약(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계약)을 체결하고, 그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.

(2) E는 2017. 5. 1. 처제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계약(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계약)을 체결하고, 그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.

(3) E는 2017. 5. 11. 처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을 증여(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)하였고, 그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의 1, 2, 갑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들의 제척기간도와 항변

가. 피고들의 주장

원고 A와 선정자 J(이하 통칭하여 원고들)은 E와 피고들 사이의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들은 자신의 각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(원고 A는 2018. 4. 17., 선정자 J는 2018. 5. 17.) 또는 늦어도 이 사건 동산압류를 한 2019. 3. 13.경에는 위 각 처분행위가 이뤄진 사실과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,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여 2020. 8. 25.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다2227474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앞서 든 각 증거, 갑 제3호증, 을 제2, 3호증, 을 제9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동산 압류 당시인 2019. 3. 13. 내지 늦어도 이 사건 동산 첫 매각기일인 2019. 6. 5.에는 E의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E의 적극재산(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 및 이 사건 동산) 가액을 초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들이 E의 각 처분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고,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. 8. 25.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.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○ 원고들은 E의 재산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영업용 재산과 이 사건 부동산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. 따라서 E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하든가, E의 적극재산 즉 이 사건 부동산,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용 재산인 유체동산 등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.

- 원고들은 2016. 7. 11.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부 지분을 인정받는 취지의 지분계약서를 작성받았다.

- 원고들은 2018. 4. 17. 및 2018. 5. 17.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/2 지분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. 이 때 원고들은 E의 위 각 처분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.

원고 A	2018. 4. 17.	107,222,150원	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566
선정자 J	2018. 5. 17.	68,079,083원	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단21192

- 원고들은 E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2019. 1. E는 해당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.

원고 A	2018. 5. 4.	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4105	2019. 1. 17. (2019. 2. 8.)	97,958,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3. 11.부터 2018. 4. 1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
선정자 J	2018. 8. 9.	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31220	2019. 1. 31. (2019. 2. 22.)	68,079,0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7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

- 원고들은 위 각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2019. 3. 13.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영업용재산인 집기 등 유체동산(이하 이 사건 동산)에 대하여 각 압류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, L)하였다.

○ E는 2019. 4. 4.경 원고 A에게 에 '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거 뭐 하러 이러냐고, 다 주고 말지. 근데 난 지금 여기에(이 사건 사업장에) 정말 다 들어가 가지고, 처음에 돈 들어간 거뿐만 아니라 계속 적자된 거, 누적된 거 여기서 돈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, 처제들한테 8천 끌어오고, 한 처제한테 7천 끌어오고, 장인어른한테 2천 끌어오고,..'라고 말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말하였다. 또한 E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걱정하자 원고 A는 E에게 '(유체동산 최저매각금액) 크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. 나오면 그걸 사모님이 사시고 내가 그 6천만원에 대한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.'라면서 피고 B를 통해 유체동산을 낙찰 받을 것을

권유하였고, E는 '그래요. 한번 그거 봐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크면 엄두도 못내는 거고.'라고 답하였다. 위 대화내용을 보면,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1/2 지분과 이 사건 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, E가 처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할 여력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, 원고 A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.

○ 이 사건 사업장은, M이 2014. 7. 1.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. M은 2018년 5월경 2018년도 사용허가 갱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였는데, 어차피 2017년도 사용료체납 때문에 위 토지의 사용허가는 종료될 예정이었다. E는 2018년 10월경 위 토지에 대한 재입찰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9. 4. 5. E를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1185)를 제기하였다. E가 2019. 4. 4. 원고 A에게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'영업 철도청은 또 영업정지 먹고 뭐 하고' 등을 말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. 원고들은 그 무렵 E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○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2019. 6. 5.부터 진행되었다. 2019. 6. 5. 동산매각기일 기준 이 사건 동산의 최저매각금액은 119,630,000원으로 원고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였다. 이후 매각되어 2020. 6. 24. 원고 A는 15,972,354원을, 선정자 J는 12,399,924원을 각 배당받았다.

○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N의 신청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O)으로 2019. 8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. 원고들은 '보통의 경매사건에서 경매부동산을 청산하면 잔존채무만이 존재할 뿐 잉여금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전무'한데 2020. 8. 19.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, 원고들이 배당에서 제외된 반면 피고들이 배당받게 되는 것을 보고서야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고, '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,335,528,600원'이었으므로, 등기부상 기재된 채무금액 전체를 합산한 것보다 큰 금액이라 실제 배당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자 P 유한회사1)의 채권액 542,356,636원(= 498,763,965원 + 43,593,538원)을 제하면 793,171,964원인데, 그중 E의 1/2 지분액은

396,585,982원(= 793,171,964 × 1/2)에 불과하다. E의 1/2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각 가압류(청구금액 합계액 175,301,233원) 외에도 ① 2019. 2. 20. Q의 청구금액 591,824,083원의 가압류(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60349) 등기, ② 2019. 4. 29. 주식회사 R의 채권최고액 20,000,000원의 근저당권, ④ 2019. 7. 11. S의 채권최고액 30,000,000원의 근저당권, ⑤ 2019. 7. 31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, ⑥ 2019. 12. 3. 대한민국(처분청: 아산세무서장)의 압류, ⑦ 2020. 1. 22. 근로복지공단의 청구금액 9,345,600원의 가압류 각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동산압류 당시인 2019. 3. 13.경 내지 이 사건 동산 첫 매각기일인 2019. 6. 5.경에는 이 사건 E의 1/2지분만으로는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.

3. 결론

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.

판사최보원

별지

1) 경매개시결정 이후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다.